2006년 제2차 카타르 일부 계층의 입국과 체류에 관한 법 요약문

내무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「2000년 제13차 경제활동에 대한 외국인자본투자에 관한 법」이 적용되는 투자자와 「2004년 제17차 외국인의 부동산과 주택소유와 이용에 관한 법」에 따라 부동산과 주택을 소유 및 이용하는 자와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그 밖의 계층에게 국내입국비자와 체류허가증을 발급한다. 체류기간은 5년이고, 체류허가를 취득한 자의 가족에 대하여도 근로조건 없이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. 체류허가를 취득한 자는 허가기간 동안 별도의 허가 없이 출국할 수 있다. 내무부장관은 체류기간만료 또는 갱신거부 시 허가를 취득한 자와 그의 가족에게 출국을 위한 유예기간을 허용한다. 이 법은 2006년 1월 30일에 공포되었으며, 2006년 4월 30일에 관보에 게재되었다.